

## 파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 조례인에 대한 검토보고

### □ 제정이유

- 우리시에서 설치·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·계약을 하고자 할 때 일반인에 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, 노인, 모자가정 여성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골자

- 공공시설은 시 및 소속기관 청사로 하며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 다만, 소속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것은 제외한다.(안 제2조)
-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·노인·모자가정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(안 제5조)
- 설치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평가 할 수 있다.  
(안 제8조)
-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관리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.(안 제10조)

## □ 검토의견

### 가. 법령적합성

#### 장애인복지법

제38조 (생업지원)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는 소관 공공 시설내에 식료품·사무용품·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# 노인복지법

제25조 (생업지원)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가 설치·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·사무용품·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

#### 모자복지법

제15조 (공공시설내 매점 및 시설설치)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안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모자가정 또는 모자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.

- 장애인,노인,모자가정의 여성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코자 하였을 경우 위와같이 상위법령상에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음.

## 나. 내용타당성

- 동 제정조례안은 파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시 장애인, 노인, 모자가정의 여성이 일반인에 우선하여 동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, 다만 동 제정조례안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고시 매점의 규모 및 자동판매기의 제한대수를 명시하여야 할 것임.